

제 23 장 최종규정

제 23.1 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23.2 조 개정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개정은,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

제 23.3 조 유보

이 협정은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적 선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.

제 23.4 조 발효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의 완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 제14.7조(발효)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은 두 번째 통보일부터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제 23.5 조 존속 및 종료

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고 하는 의도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, 그 효력이 유지된다.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일부터 6 개월 후에 종료된다.

제 23.6 조 정본

이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, 이 협정의 한국어본, 영어본 및 불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4년 9월 22일 오타와에서 한국어,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을 위하여

캐나다를 위하여